



2018년

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



이룸통장 이란?

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을 모으는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매칭지원금을 더 저축해 주는 통장입니다.

●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	금액			비고
본인저축액 (선택) ①	10만원	15만원	20만원	본인 저축액은 가입 당시 선택
매칭지원금 ②	15만원	15만원	15만원	매칭지원금은 서울시 지원
월 적립금 (①+②)	25만원	30만원	35만원	매월 적립 시
만기 적립금 (3년)	900만원+이자	1,080만원+이자	1,260만원+이자	

● 3년 뒤 만기 적립금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준비비(교육비, 의료비, 주거비, 직업훈련비 등)와 미래자산용도(신탁 등)로 사용 가능합니다.

● 다음 1~3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1. 공고일(2018. 4. 10.) 기준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1983. 4. 11. ~ 2003. 4. 10. 출생자)

2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2호의 중증장애인

- 장애1, 2등급 및 뇌병변·시각·발달·정신·심장·호흡기·뇌전증·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, 상이등급 3급 이상

3.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
- 동일가구원 : 본인, 부모, 배우자, 형제자매, 자녀만 해당 - 소득인정액 : 본인, 부모, 배우자만 해당

● 2018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*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 환산액

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중위소득 100%	1,672,000	2,847,000	3,683,000	4,519,000	5,355,000	6,191,000
중위소득100%에 따른 건강보험료 (직장가입자)	52,565	89,641	115,568	141,300	168,404	195,224

※ 가구당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※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 ②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(학자금,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)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이자인 경우 (단,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,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,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)

④ 기존 '희망플러스통장·꿈나래통장·청년통장' 참여가구 (졸업가구, 중도해지가구, 2018년 신청가구 포함) ⑤ 타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(희망키움통장 I·II, 내일키움통장 등) 참여 및 수혜가구 (※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'디딤씨앗통장'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)

이룸통장 신청방법은?

● 모집인원 | 총 1,000명 (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)

● 신청기간 | 2018. 4. 10.(화) ~ 2018. 4. 30.(월) 09:00 ~ 18:00

● 신청장소 |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,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)

● 제출서류 | 서울시(www.seoul.go.kr), 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)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
① 가입신청서(별도서식)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④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⑤ 가구원 소득신고서 (본인, 부모 및 배우자) ⑥ 장애인증명서 ⑦ 임대차계약서(자가인 경우 제외)

※ ①~⑤ 서류는 다운로드하여 작성, ⑥~⑦서류는 별도 준비 필요 ※ 본인(대리 접수자)신분증 지참 필수

※ 법원 파산면책 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(사본) 추가 제출,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결정문(사본)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(법원발급),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(신용회복위원회) 제출

● 결과확인 | 2018년 7월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● 문의사항 |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(국번없이),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